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nited States: Competent authority, changes regarding requests and APA consultations \(May 20th, 2020\)](#)

미국: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APA) · 상호합의절차(MAP) 자료 제출 지침 변경

최근 미국 국세청(IRS)은 MAP신청서 제출(근거규정 Rev. Proc. 2015-40) 및 APA 신청서 및 연례보고서 제출(근거규정 Rev. Proc. 2015-41) 관련 절차에 대한 변경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IRS 웹페이지에 게재된 성명을 통해 공포되었으며, 해당 웹페이지에서는 Covid-19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現 경제상황에서 APA 건들의 처리방식에 대한 질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IRS는 이에 대한 담당부서(APMA)의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IRS 발표문 \(2020년 5월\)](#) 에 따르면, Rev. Proc. 2015-40 혹은 Rev. Proc. 2014-51에 따라 납세자의 서명이 요구되는 서류들은 국세행정·집행부문에서 (Deputy Commissioner, Services and Enforcement, DCSE) 2020년 3월 발표한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June 8th, 2020

KEY CONTACTS



[강길원 본부장\(부대표\)](#)

(Tel: 02-2112-0907)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임시지침에 따라 서명 이미지(스캔본 혹은 사진) 또는 복사방지 기능을 사용하여 생성된 납세자의 전자서명과 함께 제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DSCE 지침은 Rev. Proc. 2015-40 혹은 Rev. Proc. 2015-41에 따른 제출서류들은 전자적으로 제출될 수 있으며, 종이문서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질의사항이 있는 납세자는 조세조약 지원·해석과(Treaty Assistance and Interpretation Team, TAIT) 또는 담당 APMA(Advance Pricing and Mutual Agreement program) 공무원(manager)에게 문의할 수 있습니다.

APA지침 업데이트

IRS는 APA 건과 관련한 질의사항들에 대해, APMA가 현재 계약상대국들과 경기 침체기간 중 정상가격 산출방법 적용, 現 경제상황이 특정 산업군에 미치는 영향, 납세자 유형 및 지역 등 다양한 실무적·절차적 이슈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APMA는 케이스별 이슈사항을 납세자 및 계약상대국과 논의할 예정이며, 논의요청 건들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일정조율 등을 위해 2020년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APA 이행 건들에 대한 문의사항을 담당 APMA 공무원(Assistant Director)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APA승인 절차가 진행중인 건들에 대한 문의사항은 각 배정된 APMA 팀장(Team Leader)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APMA는 사실관계 및 상황적 요인(예: 계약상대국과의 협상상태) 등에 따라 납세자와의 미팅 필요성 및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배경정보(예: 납세자가 제기한 이슈사항에 대한 설명, 현재 및 미래 추정 재무정보 등) 및 해당 APA건에 대한 요청·제안사항은 최소 2주 전에 서면 제출되어야 합니다.

[KPMG Report: Intangible Property Transfer Pricing In an Economic Downturn \(May 29th, 2020\)](#)

KPMG 보고서: 경기 침체시의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가격

개요

COVID-19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무형자산의 가치측정은 보다 복잡해지고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COVID-19과 같은 주요한 경제적 사건이 미치는 영향은 산업 별, 회사 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무형자산의 이전가격 산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교가능 제3자 거래 방법(CUT 방법)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이사

(Tel: 02-2112-0277)

CUT 방법은 비교가능 제3자 거래 가격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가격을 비교하여 독립기업원칙 부합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COVID-19으로 인한 경제활동 감소로 인하여, CUT 방법의 적용가능성도 함께 감소하였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반영한 비교가능 제3자 거래가격의 확인이 보다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시장상황의 변경 전에 설정된 가격은 現 경제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교가능 제3자 거래를 검색하기 위하여 경기침체 이후에 체결된 계약을 검색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거래가격에 시장상황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익방법(Income method) 및 잔여이익분할방법(RPSM)

가치 평가에 사용되는 이익접근법(Income approach)과 유사한 Section 482 하의 이익방법 및 RPSM은 추정이익 사용과 할인율(discount rate)에 대한 측정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추정이익

COVID-19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을 완전히 반영하여 신뢰가능한 추정손익을 작성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추정손익 자료를 제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시나리오 기반의 접근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험들이 적절하게 고려되었는지 여부와 추가적인 위험 조정의 필요 여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 할인율

할인율은 무위험율, 투자 위험 프리미엄 및 회사 별 위험 프리미엄(company specific risk premium, "CSRP") 등이 고려됩니다. CSRP를 제외한 할인율 고려 요소는 장기적이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특성을 보이므로 시장상황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회사 및 산업에 대한 과도한 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COVID-19 관련 CSRP를 할인율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회사 및 산업 별로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CSRP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불확실성

미국 과세당국은 COVID-19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완화된 이후에 2020 사업연도의 이전가격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0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무형자산 거래에 대한 가치측정은 거래 수행 시 사용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OECD 이전가격 지침서

상의 “가치측정이 어려운 무형자산(hard to value intangible, “HTVI)”에 대한 평가 지침, 그리고 미국 현지 규정에 따라 과세당국이 사후적으로 사용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기존 가격이 독립기업원칙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슈를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의 추정 재무성과는 경기침체의 예상 기간을 반영하게 됩니다. 경기침체가 단기에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실제 무형자산으로 발생한 효익과 추정 효익 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결론

COVID-19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경제적 불확실성이 특수관계자 간의 무형자산 거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잠재적인 세무조사 대응 목적으로 증빙자료가 구비되어야 하며, 상기 열거된 사항들을 고려하여 관계사 간 무형자산 계약 건들을 재검토하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KPMG Report: India: Amendments to MAP application and procedural rules \(May 26th, 2020\)](#)

인도: 상호합의절차(MAP) 개시신청 및 절차에 대한 규정 개정

MAP은 납세자가 법적·경제적 이중과세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조세조약은 각 국가의 권한있는 당국(Competent Authorities, CA)이 MAP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중과세가 발생한 국가의 납세자는 MAP 절차에 따라 CA 에게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도 소득세법 규칙 44G(Rule 44G)는 해외 국가의 과세당국에 의해 권리를 침해 받은 납세자가 인도 CA에게 Form No. 34F를 제출함으로써 MAP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도 국세청(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CBDT) 공고

최근 CBDT는 MAP 신청 및 관련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Rule 44G의 개정 공고(Notification No. 23/2020, 2020년 5월 6일)를 발표하였습니다.

MAP 개시신청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인도 CA에게 Form No. 34F 서식을 제출함으로써 MAP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해외 과세당국에 의한 권리 침해 및 해당 행위가 인도와 상대 국가와의 협정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 타방 국가 CA으로부터 인도 과세당국 혹은 타방 국가 과세당국의 행위에 대한 참고서면(reference)를 수취하는 경우, 인도 CA는 해당 서면에 대한 수용의사를 밝히거나 해당 국가 CA와 MAP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 인도 CA는 Form No. 34F 혹은 타방 국가 CA로부터 수취한 서면과 관련하여 인도 과세당국, 납세자 및 인도 세무대리인에게 관련 기록 및 추가서류를 요구하거나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인도 내·외 과세당국의 행위가 인도와 계약상대국 간 협정에 위배되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 인도 CA는 인도와 계약상대국 간 협정에 따라, 과세분쟁에 대한 상호합의안(mutually agreeable resolution)을 평균 24개월 이내에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MAP이 인도 과세당국의 행위로 인해 개시된 경우, 과거 사업연도에 대한 합의내용은 인도 납세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신고한 소득을 감소시키거나 결손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 합의안(resolution)이 도출되면, 해당 내용이 납세자에게 전달되고 납세자는 이에 대한 수용의사를 30일 이내에 밝혀야 합니다.
- 납세자가 합의안을 수용할 경우, 진행중인 MAP 신청 사안에 대한 불복 건의 철회(withdrawal of appeal) 증빙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세자가 합의안을 수용할 경우, 인도 CA는 납세자의 합의안 수용결과 및 불복철회 증빙을 Principal Chief Commissioner, Chief commissioner, Director General 등에게 전달하며, 이는 다시 일반 세무공무원(AO)에게 전달됩니다.
- 합의내용을 전달받은 AO는, 해당 내용을 전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합의내용의 효력을 반영한 서면통지서를 발행하며, 납부할 세액을 납세자에게 통지합니다.
- 납세자는 AO가 통지한 기한 내에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내역 증빙을 AO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MAP 대상 쟁점에 대해 진행 중인 불복 건이 있었다면, AO는 이를 철회합니다.
- 상기 통지서 사본은 인도 CA와 납세자에게 송부됩니다.

- 기존에 결정된 세액, 이자 및 가산세는 MAP 합의결과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해당 합의결과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인도 소득세법(Act) 및 규칙(Rules)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산출됩니다.

개정된 Form 34F는 기존서식에 포함되었던 납세자 관련 정보 외에도 구체적인 구제방안 내용(detail of remedy sought) 및 관련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PMG 의견

과거 인도에서는 로열티 과세, 고정사업장 존재여부, 이익귀속 등의 국제조세 영역에서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조정위원회(Settlement Commission) 사전답변국(Authority for Advance Rulings), 분쟁해결위원회(Dispute Resolution Panel) 및 APA 와 같은 현행 구제절차들은 장기간의 소송을 피하기 위한 대안의 성격으로 볼 수 있으나, 대부분 조세소송의 조기해결에 크게 효과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MAP을 이에 대한 분쟁해결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MAP은 다심제 소송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MAP 합의안은 과세당국에 대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비록 MAP 이 특정 쟁점과 기간만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합의내용의 시사점은 이후 사업연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0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